

길음3촉진구역 재건축사업 시행변경인가서										인가번호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택재건축사업 <input type="checkbox"/> 도시환경정비사업				<input type="checkbox"/> 주택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명칭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지정 근거 및 일자		뉴타운사업과-11547호 (2009.11.27)				
	대표자	성명	조합장 오 경 석			주민등록번호		*****1*****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한화 꿈에그린(아) 102-1702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34, 2층							(전화) 909-8052				
시행구역	구역명칭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1동 192번지 일대					
	시행면적	19,488.0 (㎡)				건축물	72 동 (무허가 1 동)					
	거주가구 및 인구	160가구 (480인)				도시계획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목별	지목	계	대지	도로	구거	국·공유지 관리청별	관리청	계	성북구	서울시	
면적(㎡) (필지수)		19,488 (105)	15,585 (93)	3,903 (12)		면적(㎡) (필지수)		4,979.34 (16)	4,379.34 (12)	600.00 (5)		
동의내역	토지면적				대상조합원수			비고				
	대상면적		19,488㎡		대상조합원		132					
	동의면적 (동의율)		16,227.31 (83.27%)		동의자수		98 (74.24%)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명칭		(주)제이엔케이 도시정비			대표자		백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4길 14 (☎3477-5577)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사업비		127,962,178,348원			
	건축시설	부지의 명칭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지면적 (㎡)		16,398		주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근생
		건축면적 (㎡)	3,915.87			건축연면적 (㎡)		41,186.66 (40,991.52)		지하면적 (㎡)		26,817.71
		건폐율 (%)	23.88			용적률 (%)		249.98		최고높이		69.00
		층수 (지상/지하)	지상 24층, 지하 4층			주차장 (대)		485대				
	주택	공구 구분	주택의 형태	동 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계	공동주택	5	399		계	59㎡	73㎡	84㎡		
		분양	공동주택	5	359		359	96	34	229		
재건축 소형		재건축 소형주택	-	40		40	40	-	-			

사업시행계획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 류	규모(㎡)	종 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3,885.34	도로	1,241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공원	948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경관녹지	707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공공공지	194	길음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설치후 기부채납			
철거 또는 이전 요구대상	건축물 (등)	철 거	이 전	공작물 (개소)	철 거	이 전		
		72	-		-	-		
개수대상 건축물	해당없음	임시수용계획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 지	필지수	면적 (㎡)	권리지수	건축물	동수	연면적 (㎡)	권리지수
		105	19,488	161		72	18,952.13	155
세입자 대책	대상 세대수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임대주택 공급세대		주거이전비 지급세대		비 대책세대
	해당없음	-		-		-		-
일괄처리사항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건축허가	(✓)		
	가설건축물건축허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도로공사시행허가	(✓)		
	도로점용허가	()	사방지 지정해제	()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		
	농지전용신고	()	보전임지전용허가협의	()	보안림 안에서 행위허가	()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하천공사 시행허가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		
	하천점용허가	()	일반수도사업인가	(✓)	전용상수도전용공급수도 설치인가	()		
	공공하수도사업허가	(✓)	측량성과 사용의 심사	()	대규모점포의 등록	()		
	국유지사용수익허가	(✓)	공유지대부사용허가	(✓)	사업착수변경 또는 완료 신고	(✓)		
	공장설립 승인신고	()	차량전차설비공사계획의 인가신고	(✓)	폐물처리시설(변경)승인신고	()		
	오수처리시설단독장차 설치신고	(✓)	소방등의제조소등의설치허가	(✓)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		
화약류저장소 설치의 허가	()		()		()			
기타 인가내역								

2016년 1월 일

성북구청장 인

※ 첨부서류

※ 인가안내

1.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28조).
2. 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30일이상 60일 이내 단,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연장)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분양신청 또는 기타권리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법 제46조).